

內部會計管理制度의 導入에 관한 研究

황윤식*, 김석현**, 박정숙***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wang Yoon-Sik · Kim Suk-Hyun · Park Jung-Suk

Abstrac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established Sarbanes-Oxley Act in July 2002 because of the accounting fraud of Enron and Worldcom. The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ublished Auditing Standard No. 2 covering the auditor's reporting on the ICFR(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March 2004. These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OSO framework.

The accounting reform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for accounting transparency in the aftermath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late 1997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Management's Assessment Standards for the ICFR and the Accountant's Review and Reporting Standards for the ICFR in June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oblems and provide future directions to improve the ICFR in Korea by making a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State ICFR and the Korea ICFR. And thes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ICFR in Korea.

* 동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동아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 동아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국 의회가 2001년 말 엔론, 월드콤 등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으로 실추된 기업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02년 7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업회계개혁법안인 "Sarbanes-Oxley Act"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PCAOB) 신설, CEO/CFO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인증, 내부회계통제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무화 등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일련의 회계개혁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 중 특히, Section 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ICFR)가 주는 의미는 각 기업이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할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고, 매연도말 회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유효성을 경영진이 직접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 평가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는 Sarbanes-Oxley Act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SEC Final Rule을 통해 2003년에 제시하였고,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감사기준서 제2호(재무보고내부통제(ICFR)에 대한 감사기준 : AS 2) 및 관련 질의응답(FAQ)자료들을 2004년에 발표하였는데, 이는 모두 1980년대 말 내부통제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 COSO)에서 발표한 COSO개념체계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Section 404조를 적용한 내부통제 감사의견들이 2005년에 처음 발표됨에 전후하여 학계, 실무계, 이해관계자들의 제도 도입의 영향,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 외환위기와 관련한 대우, SK글로벌 등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회계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2001년 9월 16일부터 2005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구축법"이라 한다)부터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보고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2003년 말 이후 일련의 "회계제도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 개혁법의 내용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공인회계사법·증권거래법의 개정(2003. 12. 31.)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의 제정(2004. 1. 20.)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그 동안 한시법인 구축법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해 오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 제도를 외감법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2005년 6월 23일 확정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 2005년 6월 28일 제정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제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 및 보고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들을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2005년 12월 27일 발표하였다. 이후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감사인의 판단을 돕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이 2008년 8월 29일 제정되었다.¹⁾

많은 학문적 연구와 제도적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법이 이미 시행이 된 지금도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적, 실무적 준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이론적 체계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국내외 법규, 학술논문, 연구문헌,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비교하여 이 제도의 실행으로 야기될 문제점을 지적한 후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언급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술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한 후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일본 금융청은 기업의 내부관리체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내부통제보고서를 평가하는 “내부회계감사제도”를 2008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II.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국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실패로 말미암은 허위재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1985년에 NCFPR(the National Commission 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이 구성되었고, 내부회계에 대한 개념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COSO가 발족되었다. COSO는 1992년에 내부통제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정의한 "내부통제-통합체계(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이라는 보고서(일명 COSO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Enron사태 이후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업의 신뢰성 상실 위기를 극복하고자 과감한 회계개혁을 착수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2년도에 도입된 Sarbanes-Oxley Act이다. 이를 통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SEC Final Rule을 2003년에 제시하였고, 2004년에는 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재무보고내부통제(ICFR)에 대한 감사기준을 발표되었고, Section 404조를 적용한 내부통제 감사의견들이 2005년에 발표되었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내부회계 통제체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COSO 보고서

COSO 보고서는 내부통제의 목적을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규정 및 법률의 준수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리 및 비영리 조직 모두에게 적용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세부 경영 프로세스 또는 조직수준까지 적용할 수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²⁾ COSO 모형은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내부통제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 세계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사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현하는데 있어 표준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OSO 모형은 다음과 같은 5개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요인으로서 다른 구성요소들의 기본토대를 제공(경영방침, 윤리규범, 조직구조 등)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조직목표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외부 위험요인의 식별, 분석 및 문서화
-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 : 식별된 위험을 감축하기 위한 통제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2) COSO는 1992년에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정책, 기준 및 업무절차 등의 제반활동

-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경영진의 전략방향을 전달하고, 실무진의 내부통제 수행결과, 취약점 및 당면과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지원
- 감시활동(Monitoring) : 내부통제의 운용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감독활동

COSO는 "내부통제-통합체계"를 확장하여 기업이 위험을 전사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nron사 경우와 같이 대형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투자자, 종업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Sarbanes-Oxley Act가 등장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업의 위험관리의 원칙과 개념, 방향과 지침에 대한 요구가 비등해졌다. 이에 따라 COSO에서는 기존 "내부통제-통합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내부통제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전사적 위험관리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 ERM)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nterprise Risk Management i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applied in strategy setting and across the enterprise, designed to identify potential events that may affect the entity, and manage risk to be within its risk appetite,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entity's objectives.

이를 정리하여 주요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ERM은 과정(process)으로서 지속적인 것이다.
- 조직내 모든 위치의 인력(personnel)에 의해 실행된다.
- 전략수립(strategy setting)에 적용된다.
- 전사적(across the enterprise)으로 -모든 계층과 단위로- 적용된다.
- 기업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사건(potential events)을 식별하고, 기업의 위험성향 내에서(within its risk appetite) 이들이 관리되도록 한다.
- 기업의 경영자와 이사회에게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제공한다.
- 하나 이상 분야의 목적(objective)이 달성되도록 조정된다.

결국 ERM은 경영자로 하여금 불확실성과 이에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여 가치창출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즉, ERM은 위험성향과 전략을 조정하고, 위험대응 관련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며, 기업운영에서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기업위험을 식별·관리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자본의 운영을 향상시킨다고 본다.

ERM은 기존 내부통제 개념체계의 목적과 구성요소를 포함하되 이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기존 개념체계의 목표에 전략목적(기업의 궁극적 임무와 일치하고 이를 보좌하는 높은 수준의 목적)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ERM의 요소에 기존의 5가지(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전달, 모니터링) 이외에도 목적설정, 사건식별과 위험대응이 추가되었다. 물론 이러한 요소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면적이고 상호 관련되어 있어서 각 요인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Sarbanes-Oxley Act

2002년 7월 3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시킨 Sarbanes-Oxley Act를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 법안은 기업의 투명성 및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새로운 근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두 11개의 장으로 구성된 Sarbanes-Oxley Act 중 경영진의 책임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항목은 동 법령의 3장 '법인의 책임'의 302조 '재무보고에 대한 법인 책임'과 4장 '강화된 재무정보 공시'의 404조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평가'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업개혁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의한 확인서 제출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자 보고서(Assertion)와 외부감사인의 감사(Attestation)
- 상장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공시기준의 강화
- 감사위원회의 책임확대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 회계법인을 감독하기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산하에 독립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PCAOB) 신설
- 내부자 거래의 제한과 증권사기의 방지
- 기업부정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 302조와 404조

(1) 302조

CEO/CFO는 매 분기³⁾((Foreign Private Issuer : FPI)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서약 (Certification)의무가 있다.

- 분기 및 연간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함.
- 재무상태 및 운영실적에 대한 모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공시되었음.
- 회사의 공시통제절차(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 DC&P)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ICFR)에 대한 책임은 CEO/CFO에 있다고 선언.
- 외부로 보고되는 중요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통제절차가 설계되어 있음.
- 외부보고목적의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설계되어 있음.
-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후 특정일 현재 평가를 기초로 공시통제절차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서에 제시.
- 중요한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변경사항을 공시함.
- 재무보고 내부통제상의 중요한 결함 및 이슈들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들에게 통보되었음.
- 재무보고 내부통제관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개입된 부정(중요성 불문)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통보되었음.

(2) 404조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평가-회사 연례보고서에 다음의 내용에 대한 내부통제 보고를 포함하여야 함.

- 재무보고 내부통제(ICFR))를 설계하고 유지하는데 따른 관리상의 책임을 기술.
- 발행인의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포함.
- 이러한 재무보고 내부통제 평가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입증(Attestation)되어야 함.

3) 미국에 상장된 미국외 국가의 기업은 매년.

나. CEO/CFO의 재무정보 및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인증 및 주장

CEO/CFO는 매 분기(FPD)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서약(Certification) 의무가 있다.

- 연간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함.
- 재무상태 및 운영실적에 대한 모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공시되었음.
- 회사의 공시통제절차(DC&P)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ICFR)에 대한 책임은 CEO/CFO에 있다는 선언.
- 외부로 보고되는 중요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시통제절차가 설계되어 있음.
-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설계되어 있음.
-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여, 특정일 현재 평가를 기초로 공시통제 절차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서에 제시.
- 중요한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변경사항을 공시함.
- 재무보고 내부통제상의 중요한 결함 및 이슈들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들에게 통보되었음.
- 재무보고 내부통제관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개입된 부정(중요성 불문)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통보되었음.

다. 공시의무규정의 강화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기업공개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개혁법은 몇 가지 강화된 공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 SEC에 제출되는 모든 재무제표는 미국의 일반적인 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새 개혁법은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외부 감사인에 의한 모든 지적사항 수정.
-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거래들(off-balance sheet transaction)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채무, 재무환경의 변화 등을 재무보고서에 자세히 공시.
- 새로운 법률에 의한 공시규정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SEC는 모든 상장기업들을 최소한 3년에 한번씩 조사.

라.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새롭게 입법화된 개혁법에서 강화된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모두가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외부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재무전문가여야 하는데 SEC에 의하면, 재무전문가는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 GAAP의 적용, 내부통제, 감사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과 감사 수수료를 승인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경영진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역할을 한다. 외부감사인은 GAAP의 적용과 새로운 회계상의 쟁점들, 감사인의 의견 등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감사위원회와 논의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마. 외부 감사인의 감독과 독립성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받는 기업에게 특정 종류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비감사서비스의 종류는 다음의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회계장부의 기록,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서비스
- 재무정보시스템을 설계 또는 구현해 주는 서비스
- 기업가치를 측정, 평가하는 서비스
- 보험계리 서비스
- 기업을 위해 내부감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또는 인사관리 서비스
- 유가증권의 중개 및 거래, 투자자문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감사와 관련이 없는 각종 전문 서비스

SEC로 하여금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바. 경영진과 이사진에 관한 규정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제표가 다시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 CEO와 CFO는 회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는 물론, 스톡옵션과 같은 인센티브 수당, 수정되어야 하는 재무제표가 발행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회사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개혁법은 일정기간동안 연금기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이른바 "blackout" 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진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던 권리의 남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기업의 경영진이 자사주를 거래할 경우 거래일 기준으로 40일 이내 신고했던 것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대폭 단축시켰다.

3. PCAOB 감사기준

PCAOB는 SEC의 감독을 받는 특수 목적 법인으로서, 회계법인의 등록 감사 관련 규정 및 기준 제정 회계법인의 검사 위규사항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2004년 3월에 Section 404조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감사기준(Auditing Standard No. 2, An Audi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and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을 발표하였다. 이는 회계감사인에게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감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Sarbanes-Oxley Act의 404조를 실제로 이행·준수해야 하는 회사들에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은 2001년 9월 구속법에 한시적(5년)으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2월에 외감법에 이관되면서 2004년 4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 법인부터 최초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2005년 6월 23일 제정되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은 2005년 6월 28일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27일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발표되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이 2006년 8월 29일 제정되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비교한 후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내부통제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운영목적)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재무보고목적)
 - 회사가 대외에 공표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법규준수목적)
 -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법규, 감독규정, 내부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2) 내부통제제도의 구성요소

내부통제제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통제환경 : 내부통제제도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조직체계·구조, 내부통제

를 유인하는 상벌 체계, 인력운용 정책, 교육정책, 경영자의 철학, 윤리, 리더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위험평가 : 회사의 목적달성과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의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전사적 수준 및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위험식별, 위험의 분석·대응방안 수립, 위험의 지속적 관리 등이 포함된다.
- 통제활동 :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업무의 분장, 문서화, 승인·결재 체계, 감독체계, 자산의 보호체계 등을 포함한다.
- 정보 및 의사소통 : 조직 구성원이 그들의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정보를 확인·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하며, 정보의 생성·집계·보고체계, 의사소통의 체계 및 방법 등이 포함된다.
- 모니터링 :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회사전체 또는 사업단위에 대한 자체평가, 자체 감사활동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다.

(3)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와 한계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경영진이 업무성과를 측정하고,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업무프로세스를 평가하며, 위험을 관리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위험을 회피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직원의 위법부당행위(형명, 배임 등) 또는 내부정책 및 절차의 고의적인 위반행위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주의, 태만, 판단상의 착오 또는 불분명한 지시에 의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포착함으로써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집행위험은 피할 수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로, 판단착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통제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므로 내부통제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3천만원 이하, 외감법 제20조의2)의 제재가 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 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범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함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사용·처분을 예방하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제 및 통제절차로서 이는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권한남용 및 통제회피위험 등에 대한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주요내용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관련 법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보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다. 재무보고 내부통제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거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보고 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서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Procss)을 의미

한다.⁵⁾ 내부통제 개념체계 상 일반적인 내부통제의 통제목적은 운영목적(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목적(재무보고의 신뢰성), 준수목적(각종 법규의 준수)을 모두 포함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보고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것으로 작은 의미의 내부통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 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함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기업 자산의 취득, 사용 또는 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개정 외감법에서는 구축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취지를 외감법 제2조의 2 및 2조의 3으로 흡수(2003.12.11.)하였고, 관련 법 시행령은 2004년 4월 1일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변경절차와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의 준수절차, 대표자 등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방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검토 규정을 신설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변경이 이사회결의절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의 공시,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감사인의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질문, 관련문서 확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용의 적정성 검토와 감사보고서에 그 의견 첨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용·평가·보고하는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2005년 6월 23일 확정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 2005년 6월 28일 제정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제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 및 보고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들을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2005년 12월 27일 발표하였다. 이후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감사인의 판단을 돕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이 2006년 8월 29일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COSO보고서의 내부통제-통합체계(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를 주요 준거 기준으로 채택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실제 기업 내에서 내부통제를 운영,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국내 관련법(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및 한국적 현실을 좀 더 감안하여 원칙화하였다.

외감법의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회사 및 경영자의 입장에서 내부회

5) 정운섭,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논의, 감사논단(통권 제7호), 2005, 공인회계사회

계관리제도 운영책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에서는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검토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준거체계와 관련 문서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면 <표 Ⅲ-1>와 같다.⁶⁾

<표 Ⅲ-1>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체계의 대비표

구 분	회 사		외부감사인	
	준거기준	경영진 주장	준거기준	감사인 보고
회계보고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회계감사기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원칙

(1) 원칙 1. 이사회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책임

이사회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니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기능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정 및 관련 정책의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을 포함한 조직구조에 대한 승인
- 회사 내 재무보고, 자산보호 관련 부정 및 제 위협에 대한 이해
- 경영진이 재무정보 관련 제 위협을 평가,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지에 대한 확인
-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6) 권수영·이재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국내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제15권 제1호), 2006, p119.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 및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취약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2) 원칙 2.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상근이사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이사회가 승인한 내부회계관리 기준 또는 규정의 시행
-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 조직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권한/보고관계의 명확화

회사 내 특정 기능 또는 사업부를 책임지는 담당자(임원)는 해당 기능, 사업부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를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3) 원칙 3. 통제문화

이사회와 경영진은 직원들에 대하여 직업윤리 및 청렴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급 직원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또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절차를 충실히 따를 필요가 있다.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 내부회계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윤리강령/정책의 위반사례, 위법, 부정행위의 발견 시 담당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보유하여야 한다. 회사의 윤리강령, 준법감시, 부정방지 프로그램 등에는 재무보고관련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시에 적발 및 시정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원칙 4. 위험의 인식 및 평가

경영진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영진의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는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계정과목 각각에 관련된 경영진의 주장(실재성 또는 발생사실, 완전성, 평가 또는 배분, 권리와 의무,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진은 새로 발생하거나 지금까지 통제되지 않았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5) 원칙 5. 통제절차의 수립

통제절차는 회사 일상 업무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단위 수준에서의 통제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6) 원칙 6. 업무의 분장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이해관계의 상충을 발생시키는 임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적절히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의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감시해야 한다.

(7) 원칙 7. 정보

회사의 회계 및 재무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적시에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일관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8) 원칙 8. 의사소통

경영진은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각자의 책임 또는 임무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관련된 정보가 해당 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여야 한다.

(9) 원칙 9.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전반적 효과성에 대해 정기적인 자가평가를 수행하여 이사회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가평가는 내부통제의 궁극적인 책임이 경영진에 있으므로 핵심적인 활동이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가평가에 사용된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자가 평가 수행절차와 운영실태 보고 내용의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책임 관점에서의 독립적인 평가 활동이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10) 원칙 10. 시정활동 및 사후관리

경영진은 자가평가 활동 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통제상의 취약점이 적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원칙 1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문서화를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단계이다.

-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통제 파악
- 중요한 계정과목 및 공시정보의 파악
- 재무제표 주장의 식별
- 핵심 프로세스 파악 및 평가 대상 사업부/조직의 결정
- 통제 설계의 문서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원칙 12)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원칙 13)

(12) 원칙 1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의 효과성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및 중요한 재무제표 주장과 관련한 업무 단위 수준의 통제절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13) 원칙 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경영진은 전사적 수준 및 업무 단위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진은 통제 운영의 효과성 평가 계획 (시기, 범위)을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해 문서화 하여야 한다.

(14) 원칙 14. IT 통제평가

경영진은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T 일반통제 및 응용통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원칙 15. 평가결과 보고 및 취약점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서 및 감사의 평가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 결론을 내리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표 Ⅲ-2> 외감법 및 모범규준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⁷⁾

구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		모범규준(2005. 6. 23 제정)			
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비상장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업은 제외)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동제도시행시기	2004.4.1 (2003.12.11 구축법에서 이관)	2007.7.1부터 결산기별 순차적용	2006. 1. 1	2007. 1. 1	2007. 1. 1	2007.7.1부터 결산기별 순차적용
동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시행시기	상 동 (최초적용:2005년에 제출하는 3월결산시 감사보고서)	상 동 (최초적용:2008년에 제출하는 6월결산시 감사보고서)	상 동 (최초적용:2007년에 제출하는 12월결산시 감사보고서)	상 동 (최초적용:2008년에 제출하는 12월결산시 감사보고서)	상 동 (최초적용:2008년에 제출하는 12월결산시 감사보고서)	상 동 (최초적용:2008년에 제출하는 6월결산시 감사보고서)
비고	-	-	-	-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준용가능	-외감법 제2조의2 규정을 따르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3. 미국과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교

가. 미국 Sarbanes-Oxley Act 404조와 우리나라 외감법과의 비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미국의 Sarbanes-Oxley Act 404조와 우리나라의 외감법과

7) 한영근, 내부회계관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상장, 2005, p107 수정함.

의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 비교하면 <표 Ⅲ-3>과 같다.⁸⁾

<표 Ⅲ-3> 미국 Sarbanes-Oxley Act 404조와 우리나라 외감법과의 비교

구 분	미국 Sarbanes-Oxley Act 404조	우리나라 외감법
내 용	-경영진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수립 및 유지 책임 -매년도 말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이러한 재무보고 내부통제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입증되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에 의한 운영 실태 보고에 한 평가 -상장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의 공시의무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표명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외감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과 미국의 Sarbanes-Oxley Act 404조를 비교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Sarbanes-Oxley Act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Sarbanes-Oxley Act의 경우는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정의·문서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차보고서에 수록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고, 국내는 현재 관련법 및 관련 모범 기준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나. 미국 Sarbanes-Oxley Act 404조와 우리나라 외감법과의 비교

미국의 Sarbanes-Oxley Act에 의한 내부통제제도 감사기준과 우리나라의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과의 비교결과를 <표 Ⅲ-4>에 정리하였다.⁹⁾

8) 이명곤 · 이세철 · 이해경, 중소기업 내부통제제도의 구축방향, 회계저널(제14권 제3호), 2005, p42 수정함.

9) 정운섭,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대한 논의, 감사논단(통권 제7호), 2005, p82를 수정함.

<표 Ⅲ-4> 미국의 PCAOB기준과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비교

구 분	미국 PCAOB Standards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근거법	Sarbanes-Oxley Act	외감법
확신종류	감사의견을 통한 합리적 확신	검토의견을 통한 제한적 확신
보고서종류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작성기준	COSO Framework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한국형 COSO Framework)
의견종류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면 부적정, 없으면 적정의견, 다만, 범위제한에 따른 한정과 의견거절도 있음	예외사항 없을 경우 적정, 중요한 취약점 발견시 한정, 특히 중요한 취약점 발견시 부적정, 범위제한에 따른 한정과 의견거절로 구분함
적용대상	미국 SEC 등록법인	외감대상 모든 법인
보고서 작성방법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통제 감사의견을 같은 페이지에 감사보고서로 작성하는 방법과 구분하는 방법 모두 허용	외감법상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작성(검토의견이므로 구분 작성해야 함)
실제효과성과 운영효과성의 확인방법	내부통제 효과성 확인시 실제효과성과 운영효과성 모두에 대하여 감사수준의 절차 수행(내부통제 시사까지 포함)	실제효과성과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검토절차 실시, 검토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자체평가내역 및 근거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함
예외적용규정	예외사항 없음(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중)	중소기업 특히,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를 일부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함

4.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충격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환경의 변화(경영자의 인증, 증권집단소송제 등)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적절히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발생할 문제점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전반의 여러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1) 국내 기업 최고경영진의 인식 부족과 전사적 지원 체계 부족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모범규준 등)을 미국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비교해 보면 국내 규정들이 미국기준을 충실하게 준거하여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국내 기업들의 최고경영자와 실무책임자들의 인식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경영자들은 외부 감사인만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까지도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재무제표에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된 후 경영진 등에 대한 책임 추궁에 어떻게 방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회계부서나 내부감사부서 차원의 서류작성업무 수준이거나 체크리스트 채워 넣기 수준의 업무나 체크리스트 내용 이상의 실질적 통제에 대하여는 고려가 없다. 특히, 국내 기업환경 상·하위직급자가 지배구조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어렵다. 조직구조의 변경 등 전사적 통제 관련 취약점은 적시의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후적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고경영층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성에 대한 일관된 관심 및 전폭적 지원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2) 전사적 통제 등 전반적 위험평가 및 통제의 취약성

국내기업들은 대체로 전사적 통제 등 전반적 통제가 취약하며, 중요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통제(operational control) 위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제평가책임을 거래를 표본 추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취약점은 전사적 통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사적 위험관리체계(ERM)의 공식화와 전사적 통제의 실제 시행 및 문서화 부족은 국내 기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재무자료의 작성, 회계결산 및 공시자료의 작성 등 일반적 회계통제절차에서의 위험평가, 적절한 회계처리에 관련된 위험평가와 감독기능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련하여 실질적 평가 보다는 하위직급자들의 단순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지사 및 종속회사의 회계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및 통제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회사나 지사

의 운영을 독립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지나친 자율에만 맡기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인 연결 회계나 지분법 회계가 불가능한 대부분의 경우도 이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3) 전반적 IT통제와 일반응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무관심

국내기업들은 IT시스템의 통제에 대하여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 IT일반 통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하위절차 위주의 통제에 집중되고, 전반적 IT통제에 대하여는 대체로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주로 인적 조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산개발과 운영을 해왔던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IT시스템이 아닌 일반 응용프로그램들(예, 엑셀 프로그램 등)이 회계자료 작성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방식에 의한 재무자료 작성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적 경험과 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 작성 과정, 회계 기초자료의 산출 절차 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4) 결산능력 등 필수적 회계통제에 대한 감독 및 인식 부족

국내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기말결산절차에 대한 일반회계 통제(periodending general control) 등 필수적 회계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국내기업 경영자 및 직원들은 전산통제(IT control), 공시통제절차(DC&P), 내부감사 등의 통제절차가 강화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공시통제절차는 CEO/CFO가 사업보고서 공시자료에 대한 인증을 위한 통제절차일 뿐이고, 전산통제는 안정적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독립적 검증 및 견제기능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통제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통제절차들의 신뢰성이 높다고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신뢰성(즉 재무보고 및 회계자료의 신뢰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신뢰성은 결산절차(general accounting)에 대한 인적, 조직적 능력이나 여건, 그리고 회계결산, 재무보고에 대한 전반적 감독기능(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모니터링기능, 최고경영자의 회계투명성 의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결산절차에 대한 통제는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인력만 증가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적 회계감독기능(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 기능 포함), 회계처리 역량확보를 위한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주석자료) 작성 능력 확보를 위한 인력 개발 등의 전반적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5) 문서화 및 자체평가 절차 : 통합된 통제조직구조로의 운영 부족

국내 대기업들은 회계팀과 내부통제 관리팀이 별개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를 별개의 기능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양 부서 간에는 서로 관련성을 확인하거나 조율하는 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회계부서 또는 기획부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주관하나, 인력부족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체적 내부통제 운영능력과 결산능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효과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부서와 내부통제 관리부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문서화 및 자체평가절차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문서화와 평가절차 및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취약하고, 문서화 요구수준에 대한 이해도 안되어 있고, 기업내 자체평가팀의 전문성 및 경험도 부족하다. 실제 상황에 적용시 중요한 취약점 여부의 판단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경험도 전무하다. 동 상황에서 내외부 평가과정에서 실제로 통제절차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는 특히 부족하다. 게다가 자체평가절차 시에는 표본조사 방식에 따라 충분한 범위의 자체평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6) 중소기업의 취약성 :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엄격성 개선 필요성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의 내용은 COSO 개념체계와 Sarbox 규정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2005년 말에 발표된 모범규준 적용해설서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나 적용지침의 내용들도 중소기업들에게는 조속한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구체적 절차와 문서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윤리규정, 성과지표, 인사규정 등 통제관련 규정의 미비, 이사회나 사외이사제도 등 지배구조관련 제도의 유명무실한 운영, 부서단위 세부실행계획 및 목표관리의 부실한 관리체계, 권한과 책임의 배분절차 미비 및 실질적 위임전결 규정의 유명무실화, 전사차원의 위험평가 미비 등 일반적 통제환경 및 모니터링 요소로부터 구체적 통제절차와 전산통제사항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보완 준비사항이 산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서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는 있으나 아직 추가적인 지침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시험적용한 평가결과 대표적 통제취약점의 전 항목에서는 극히 취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정에서 중소기업용 적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지침과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7) 원가 부담의 증가

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제도와 관련하여 조직, 인력, 업무프로세스 등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초기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외에 별도의 의견 표명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기업의 감사비용 및 자문수수료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제도가 도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심각한 경영상의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나.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 전반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체제는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제도지원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제도지원기구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하)가 있다. 이외에도 감독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포함한 지원기구들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취약점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동 판단기준의 실제 적용시 각 기업별, 감사인별 판단 수준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내부통제 업무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나 회계사들의 의견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판단의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시된 국내기준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될 혼란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 또는 최고경영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을 위하여 상기 지원체제를 통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실득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대차이의 조정 문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범규들은 부정이나 회계문제의 발생시 향후 법적 책임 논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회계부정 발생 후 주주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대표적인 주주소송(집단소송 포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기업들, 회계업계, 감독기관들의 인식은 종전의 구축법 체계에서의 안이한 업무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제반 범규의 내용에는 법적 책임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경영자 및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수 있는 조건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록 제반 범규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부정 발생시 사후적 책임여부의 판단을 위해서 부정위험 통제절차에 대한 구체적 실무지침과 법적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법조계와 경영계의 상호 보완적 공동연구와 지식축적, 교환이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평가(회사, 경영자) 및 검토업무(외부감사인)의 적절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상호이해를 구해야 한다.

(3)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구분적용 필요성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은 미국 다음으로 처음으로 내부통제 공시를 의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국내 규정내용들은 미국 규정들과 유사하면서도 실제 적용상의 내용이나 업무 절차의 범위 등에서는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감독당국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도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검토보고서의 확산수준 완화 및 중소기업 적용규정 완화 규정 이외에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 영문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가 첨부될 것이므로 실제 적용 차이와 관계없이 외국 투자자 등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규정이 미국의 Sarbox 404조의 내용과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국내 제도나 환경상의 관행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이 수립되고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을 대규모 주권,코스닥상장기업(해외상장 기업 포함, 이하 동일: 1군), 중소기업 국내주권,코스닥상장기업(2군), 비상장기업(3군)의 3개 기업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적인 의무화는 공개기업(1군과 2군)만을 대상으로 하되, 1군에는 강화된 기준(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의무화 등)을, 2군에는 약식 기준(현행과 같은 검토의견 또는 완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고, 3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여부를 기업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404조 완화적용방안에 대하여 찬반 논쟁이 팽팽하기는 하나 미국 SEC도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의 적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4) 내부공시관리제도의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감법의 특성상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작성과 보고로 한정된다. 한편, 공시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는 내부공시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이 내부공시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 내부에 별도의 공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5) 경영진의 기본적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결산지원 회계법인 제도 도입

미국의 경우 중요한 취약점의 직접적 원인사유 중 높은 비율은 기본적 재무제표의 작성능력 부족(인력부족 원인 포함)과 연말감사시 중요한 수정사항의 발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기업 및 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장·코스닥 기업들조차도 감사인의 지원이나 사실상 대행이 없이는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일반회계-기말결산절차(period-ending general accounting)”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본 재무자료 작성은 물론이고 복잡한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조직적, 인적 능력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선을 위하여는 감독당국, 공인회계사회, 기업, 감사인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외부인력 활용방안을 포함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산지원 회계법인(private accountants) 선임을 통한 운영방식은 현실적, 실무적 대안이 될 수 있다.

(6)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별도 평가 기준 개발 필요

모범규준의 평가 원칙은 사실 기업의 경영진이 수행하여야 할 평가 원칙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현 여건 상 사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비상임인 경우가 많으며 지원조직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상법 제 447조의 4 감사보고서 제출의무에서 감사는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4주간의 보장된 감시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도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규정도 모두 경영진의 평가보고 책임,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책임을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직접 평가에 관여하기 보다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의 평가 보고 활동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Keinath and Walo(2004)는 감사위원회의 최선 관행을 분석하고 경영진이 주도하는 내부통제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이 있지 직접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구축, 운영, 평가, 보고하는 전 과정을 엄격히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자가평가 원칙만큼 자세히 평가할 수는 없고 일부 표본 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7) 기업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모형이 전사적 위험 관리 체제로 발전

2004년 COSO는 전사적 위험 관리 개념체계(ERM)를 발표하였다. ERM은 기본적으로 1992년 COSO 내부통제 개념체계를 확장하여 기업의 모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형으로 현대 경영이론과 실무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특히, 위험 평가 부분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기업의 전략적 사고와 기업의 위험관리를 직접 연계하였고 위험 관리도 포트폴리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방법은 당연히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한다. 회사 전체에서 중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위험을 포트폴리오 관리할 수 없다. SEC 최고회계책임자인 니콜레이슨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모든 기업이 당장 ERM을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금융기관은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모든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내에서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밀려오는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좋은 방어수단이라고 인식하여 받아들인다면 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정착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8)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는 외부의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일시적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고유가 및 환율절상 등 최근의 어려운 기업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정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약 10,000개사로 추정되는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영세성, 저조한 수익성을 감안할 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소요되는 외부컨설팅 비용에 대해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은 기업 스스로의 세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앞당기게 되어 자율적이고도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게 될 수 있다.

IV. 결 론

우리나라 회계제도개혁법안 내용의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 9월 구축법에 한시적(5년)으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2월에 외감법에 이관되면서 강화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엔론사건이 발생한 이래 2002년에 Sarbanes-Oxley Act가 제정되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다양한 회계혁신을 위한 제도로써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계혁신의 중요한 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대차이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내부공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영진의 기본적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지원 회계법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별도 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업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모형이 전사적 위험 관리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여덟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자는 급변하는 회계환경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결코 적지 않음을 깨닫고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새롭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과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수영·이재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국내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제15권 제1호), 2006.
- 김미현, 벤처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성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모범규준 해설, Business finance law(제13호), 2005.
- 김성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해설, 월간경리(제30권 제10호), 2006.
- 김정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적용방안,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진홍, IT 배부동제 구축시의 고려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저널(제2권 제2호), 2005.
- 김효진·김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상장협연구(제54호), 2006.
- 서정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활용, 기업지배구조리뷰(통권 제18호), 2005.
- 서정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의 배경 및 내부통제 개념체계,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 2004.
- 심영수, 주식회사의부감사에관한법률에 나타난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그 목적과 구성체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송연경·염성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논집(제6권 제2호), 2006.
- 송인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투명성, 상장협연구(제53호), 2006.
- 오기원·윤훈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개선과제(1회 삼일포럼 발표자료), 삼일회계법인, 2005.
- 이명곤·이세철·이혜경, 중소기업 내부통제제도의 구축방향, 회계저널(제14권 제3호), 2005.
- 이상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해설, 월간경리(제30권 제4호, 제5호, 제6호), 2006.
- 이은정,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찬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문섭,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논의, 감사논단(통권 제7호), 2005.
- 최승환, Sarbanes-Oxley 법과의 비교를 통한 회계개혁법안에 대한 연구 : Sarbanes-Oxley 404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영근, 회계감사, 법영사, 2005.
- 한영근, 내부회계관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상장, 2005.
-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발표일정, 금융감독원, 2005.

-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추진경과, 금융감독원, 2005.
-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안), 2004.
- 재정경제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FAQ자료, 2005.
- 한국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회계감사기준위원회, 2006.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05.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05.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5.5.31. 개정: 법률 7524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2004.4.1. 개정: 대통령령 18351호].
- 금융감독원, <http://dart.fss.or.kr>, 2006.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http://www.kkca.or.kr>, 2006.
- 한국공인회계사회, <http://www.kicpa.org>, 2006.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http://www.cgs.or.kr>, 2006.
- Ashbaugh, H., D. Collins and W. Kinney, 2005, The Discovery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Working, 2005.
- Bryan, S., and S. Lilien, Characteristics of Firms with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 An Assessment of Section 404 of Sarbanes-Oxley, 2005.
- Compliance Week, January Internal Control Report : Adverse Opinions Emerge, Compliance Week(February 8), 2005.
- COSO, The Enterprise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2004.
-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 COSO Report, AICPA, 1992.
- Financial Executives International(FEI), Sarbanes-Oxley Section 404 Implementation : Practices of Leading Companies, FEI Executive Report(May), 2005a.
- Financial Executives International(FEI), FEI Special Survey on Sarbanes-Oxley Section 404 Implementation: FEI Executive Summary(March), 2005b.
- Jensen, K. L. and J. L. Payne, Management Trade-Offs of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Auditor Expertis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Vol,22, No,2), 2003.
- J. Krishnan,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Vol,80, No,2) 2005.
- Moody's, Section 404 Reports on Internal Control : Impact on Ratings Will Depend on Nature of Material Weaknesses Reported, Moody's Special, 2004.